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32
----------	-------

발의연월일 : 2026. 4. 10.

발 의 자 : 조계원 · 김문수 · 홍기원
안도걸 · 이광희 · 안호영
복기왕 · 이개호 · 허성무
최혁진 · 정진욱 · 이성윤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수어의 토대인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대중매체로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바람직한 국어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의 규정이 「국어기본법」에 비해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어 역시도 「국어기본법」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공 대중매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교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가 잘못된 수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

14조제2항 신설 등).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화언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공공”을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 공공”으로, “홍보하는”을 “홍보·교육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②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한국수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u>공공</u>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u>홍보하</u> 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4조(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① ----- -- <u>신문 · 방송 · 잡지 · 인터넷</u> <u>또는 전광판 등 공공</u> ----- ----- ----- <u>홍보 · 교육하는</u> ----- ----- ----- -----.
<신 설>	② <u>신문 · 방송 · 잡지 ·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한국수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② · ③ (생 략)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국가는 <u>제3항에</u> 따라 지정된 한국수어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 <u>제4항에</u> ----- ----- ----- -----.
⑤ <u>제2항에</u>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및 <u>제3항에</u> 따른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	⑥ <u>제3항에</u> ----- ----- -- <u>제4항에</u> ----- -----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